KOHSA GUIDE

Н - 75 - 2015

사업장 작업환경 평가지침

2015.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ㅇ 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철호

ㅇ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장재길, 진찬호

o 제·개정경과

- 1999년 11월 : 산업위생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1999년 12월 :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05년 5월 :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2005년 6월 :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 2012년 5월 :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5년 4월 :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ㅇ 관련규격 및 자료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事業者が講ずべき快適な職場環境の形成のための措置に 關する指針)

-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 kosha.or.kr)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5년 9월 3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사업장 작업환경 평가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스스로 작업환경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깨끗한 작업환경" 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환경·보건·위생 등 제반 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청결하고 적합한 작업장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 (나) "작업환경개선"이라 함은 사업주가 기업경영상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을 사업장에 적절하게 설치하여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작업환경 평가

4.1 평가 분야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사업장내 작업환경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1) 일반관리 분야
- (2) 유해물질관리 분야
- (3) 작업환경관리 분야
- (4) 작업관리 분야
- (5) 근로자 건강관리 분야
- (6) 근로자 후생 복지 분야
- (7) 사무실 공기질 분야
- (8) 기타 분야

4.2.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 (1)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2) 항목별 평가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양호", "미흡", "불량"으로 구분 한다.

4.3 평가팀의 구성운영

- (1) 평가팀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다.
- (2) 평가팀에는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 (3) 깨끗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평가팀을 구성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4.4 평가 수준별 분류

평가된 결과는 〈별표 3〉과 같이 평가 수준이 "불량"인 항목과 "미흡"인 항목을 구분하여 분류하고 관리한다.

5. 작업환경 개선 계획 수립

5.1 개선 우선순위의 결정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선 대상 공정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별표 3〉의 평가 수준별 분류표에서 "불량"인 항목부터 개선한다.
- (2) 직업병 유소견자나 요관찰자가 발생된 작업 장소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 가능한 작업 장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5.2 개선 계획서의 작성

- (1) 〈별표 3〉의 평가 수준별 분류표에서 "불량" 및 "미흡"으로 평가된 항목은 〈별표 4〉와 같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고 개선에 착수한다.
- (2) 〈별표 4〉의 개선 계획서에는 세부 개선방법, 목표, 추진 일정, 개선결과 평가방법, 소요 예산, 개선 후 효과, 개선책임자 및 담당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 (3)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련 자료나 법규 등을 충분히 조사한다.
- (4) 작업 장소 및 작업 형태 등에 따라 적합한 개선 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개선 기간을 고려한다.

5.3 근로자의 의견 반영

작업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 영한다.

6. 작업환경 개선 후 평가

사업주는 개선 계획에 의한 작업환경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개선 후 평가를 실시한다.

6.1 개선 후 평가 시기

개선 후 평가 시기는 사업주가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항목별로 개선이 완료된 시점으로 하며 가능한 한 당해 연도 말까지 평가를 실시한다.

6.2 개선 후 평가 내용

개선 후 평가는 이전의 평가를 실시한 평가자가 〈별표 1〉의 평가표에 의하여 동일 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6.3 평가 결과의 조치

- (1) 사업주는 "미흡" 또는 "불량"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양호" 등급으로 개선되 도록 노력한다.
- (2) "양호" 등급으로 개선되지 못한 항목은 반복하여 개선하고 재평가를 실시한다.
- (3) 시설과 설비의 성능이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4) 지속적으로 작업 내용을 추적하고 근로자의 연령 구성 변화를 파악하여 이에 상용하는 조치를 취한다.

7. 작업환경 개선 후 사후관리

- (1) 사업주는 "양호"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개선이 완료 후에도 6개월에 1회씩 평가를 실시하고 "불량"이나 "미흡" 등급으로 된 항목에 대해서는 "양호"등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8. 개선 참여자의 준수사항

8.1 사업주

- (1) 사업주는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근로자 대표 및 보건관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 (2) 사업주는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및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한다.

8.2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및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8.3 근로자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각종 조치에 따라야 하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기구 등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8.4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조언한다.

<별표 1> 작업환경 평가표

			평가		개선 후 평		팅가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일자 양호	미흡) 불량	(일자 양호	미흡	<i>)</i> 불량
	1. 작업장내의 유해 인자들에 대한 유해·위험성 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가?						
	2. 조직별 보건안전에 관한 임무가 포함된 보건 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는가?						
	3. 보건관리자가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가?						
1.일반관리	4. 보건관리자가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 참 여하고 있는가?						
분야	5. 현장의 정리·정돈·청소·청결 (4S) 등을 유지하 기 위한 제도와 운동은 실시하고 있는가?						
	6.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집단 활동을 실시 하고 있는가?						
	7. 근로자에 대한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정 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8. 교재를 이용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1. 유해물질의 용기에 유해물질 표시가 적절한 가?						
	2. 출입금지 등의 각종 표지가 유해물질의 저장 장소 등에 부착되어 있는가?						
2.유해물질 관리분야	3.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으며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는가?						
	4. 유해물질에 대한 MSDS가 작성되어 교육에 활용되고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 는가?						
	5. 유해물질 보관 장소에 설치된 환기시설은 적절한가?						
	1. 작업환경측정을 규정대로 실시하고 유해인자 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가?						
3.작업환경 관리분야 3.1 일반 대책	 노출기준 초과 또는 초과 가능인 작업장소에 대한 대책 제시가 정확하며 실제로 제시된 대책에 따라 개선을 실시하고 있는가? 						
	3. 분진, 관리대상유해물질 등 화학적 인자에 대 하여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등 공학적 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4.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 으며 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일자:)		개선 후 평 (일자:		팅가)
			미흡	불량	양호	미흡	불량
	1. 분진작업 장소에 대한 설비는 규정에 적합한가?						
	2. 제진장치는 제진방식에 맞게 가동되고 있으며 배기구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가?						
3-2 분진	3. 후드는 분진발생 장소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적 정 제어속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4. 습식작업이 가능한 작업은 모두 습식화 하였는가?						
	5.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1.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2.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환기·인원점 검·출입금지·사고 시 대피·감시인의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가?						
3-3 밀폐공간	3. 터널이나 갱 등 유해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유해가스 농도측정 등 적절할 조치를 취하는가?						
	4. 밀폐공간 작업에 대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 고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는가?						
	5. 산소농도를 사전에 측정한 후 작업에 임하는가?						
	6. 필요한 때 송기 마스크와 안전대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는가?						
	1.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 소음발생의 억제 및 전파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2. 개선 후에도 85dB(A)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 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고 있는가?						
3-4 소음·진동	3.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4. 진동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을 실시 하여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고 있는가?						
	5. 진동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방진장갑 등 보호 구를 지급하고 있는가?						
	1. 온·습도 조절 시설, 고열발생에 대한 국소배 기장치, 고열원의 격리나 복사열 차단설비 등 을 갖추었는가?						
3-5 온·습도	2. 고열작업 근로자에게 방열복과 방열장갑 등을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가?						
	3. 고열작업 장소에 식염과 깨끗한 음료수가 비치되어 있으며 작업의 강도에 따른 휴식시간은 적절한가?						
	4. 한랭작업 근로자에게 방한모, 방한장갑, 방한 복 등 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일자)	(일자)
	1. 방사선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때	양호	미흡	불량	양호	미흡	불량
	1. 정자선을 위표하는 시절에 대하여 필요한 때 밀폐·격리·차폐 시설을 하였는가?						
	2. 방사선을 취급하는 지역에 출입금지 등 적절한 경고 표지와 흡연금지 표시를 부착하였는가?						
3-6	3. 필요한 때 근로자에게 보호의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하는가?						
전리·비전리 방사선	4. 방사성물질을 관련 법에서 지정한 방식에 따라 적절하게 폐기하고 있는가?						
	5. 방사성물질의 가스·증기·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발산원에 대하여는 밀폐를 실시하거나 적절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였는가?						
	1. 관리대상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 발 산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밀폐를 실시 하거나 적절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였는가?						
	2.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는 적절한 제어풍속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필요환기량 이상이 유지되고 있는가?						
	3. 작업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시공되어 있 는가?						
	4. 누출방지 조치, 경보설비 설치 및 긴급차단 장 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3-7 관리대상	5.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취급설비 등에 대하여 작업수칙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가?						
유해물질	6. 취급하는 발암성 물질에 대하여 취급일지 등 을 작성하는가?						
	7.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작업 장소에 명칭 등 과 흡연금지표시를 게시하였는가?						
	8. 운반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뚜껑·마개 등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저장 장소에 대하여는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9.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세 척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10. 필요한 때 적절한 보호구나 보호의를 지급한 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하거나 교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일자:)			개선 후 평가 (일자:)		
			미흡	불량	양호	미흡	불량	
	1.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서 물질을 취급·사용하는가?							
	2. 작업장에 출입금지표시를 게시하고 관계자 외 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3. 밀폐시설을 설치하거나 밀폐형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및 가동하고 있으며 해당 장치는 적절한 제어풍속을 유지하고 있는가?							
3-8	4. 작업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시공되어 있는가?							
허가대상 유해물질	5. 취급설비 등에 대하여 작업수칙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있는가?							
	6. 작업장에는 명칭 등과 흡연금지 표시를 게시 하였는가?							
	7. 긴급세척시설과 적절한 목욕시설을 갖추고 필 요한 용품을 비치하였는가?							
	8.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한 후 착용 하도록 하고 보수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가?							
	1.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때 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2.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건강장해 정후가 나 타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4. 작업	3.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건강 장해 징후를 느끼는 경우 의학적 조치 등 적 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관리분야	4.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는가?							
	5.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하여 과도한 작업의 제한과 중량표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6. 컴퓨터 단말기 작업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는가?							
	7. 직무스트레스에 대하여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5. 근로자	 개인별로 건강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상담일지 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3. 는도자 건강관리 분야	2.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선정과 검사 항목은 적절한가?							
т <u>-</u> Ļ	3. 요관찰자 또는 질병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관 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퍼기치미	게보더키취ㅁ	(0) 7)	평가 ·	\	개선 후 평가 (일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일자 양호	미흡	<i>)</i> 불량		· 미흡	<i>)</i> 불량
	1. 샤워 및 세면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생 및 청결, 정리, 정돈상태는 양호한가?						
	2. 세면장은 화장실과 격리되어 있는가?						
	3. 세면장은 충분히 넓은가?						
	4. 탈의실과 목욕실은 적정 순서로 구분하여 배치되어 있는가?						
	5. 갱의실은 작업복과 일상복을 구분하여 보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6. 휴게실은 유해물질 취급장소와 격리되어 있는가?						
	7. 휴게실은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은가?						
6. 근로자	8. 식당은 근로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충분 히 넓으며, 유해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0. 도포자 후생 복지 분야	9. 건강관리실은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는가?						
	10. 건강관리실은 상·하수도설비, 침대, 냉난 방 장치, 외부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필요한 시설 갖추고 있는가?						
	11.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으며 급수상 대는 양호한가?						
	12. 화장실의 채광 및 조명상태는 양호한가?						
	13. 화장실은 환기 상태가 양호하며, 화장실의 악취가 사무실 또는 작업장내로 확산되지 않는가?						
	14. 화장실 변기의 숫자는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비례하고 있는가?						
	15. 화장실 바닥은 물청소가 가능하도록 방수 처리가 되어 있으며 배수에 적합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가?						
	16. 화장실의 청소 및 소독, 청결, 정리, 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평가		개~	선 후 평	형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일자	(일자:)		(일자	:)
		양호	미흡	불량	양호	미흡	불량
	1. 사무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기류의 속도는 적절한가?						
7. 사무실 공기질	2. 공기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을 실 시하고 필요시 개·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분야	3.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사무실 공기질 기준 을 준수하는가?						
	4. 공기정화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보호구의 지급과 오염물질에 대한 주지 등을 실시하 고 있는가?						
	1. 작업면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2. 잔재물은 적절히 처리하거나 폐기하는가?						
8. 기타	3. 근로자의 작업 장소는 청결히 유지되고 있 는가?						
분야	4. 국소배기장치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5.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닥트·배풍기와 배기 구는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가?						
	6. 근로자가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때 국소배 기장치를 상시 가동하고 있는가?						

<별표 2> 작업환경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양호	미흡	불량
	1. 작업장내의 유해 인자 들에 대한 유해·위험 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가?	업장내의 각종 유해인자	내의 각종 유해인자의 종류 는 파악하고 있으나, 유	종류와 그에 대한 유해·
	2. 조직별 보건안전에 관한 임무가 포함된 보건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는가?	산,지원,관리)을 대상으		산,지원,관리)을 대상으로 각 조직별 임무가 포함된 보건·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
	3. 보건관리자가 종합계 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립 시 보건관리자의	
1. 일반관리 분야	4. 보건관리자가 작업환 경측정 및 건강진단 에 참여하고 있는가?		단 등의 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소극적으	
	5. 현장의 정리·정돈·청 소·청결 (4S)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와 운동은 실시하고 있는가?	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등 작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 들어져 있으나 현장에서	등 4S 운동을 하지 않 고 있으며 현장도 정리
	6.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집단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o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집단을 구성하여 소 집단별로 자체 추진방 안 등을 마련하여 활발 히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 경진대회 개최 등 활동이 적극적인 경우	집단을 구성하고 있으나 목표 하달에 의한 시행	
	7. 근로자에 대한 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하 여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가?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	자체 교육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참석율이 50%~90% 수준인 경우	

Η	_	75	-	2015
Н	_	75	_	2015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양호	미흡	불량
	8. 교재를 이용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o 각종 교육에 필요한 교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교육 시 확보된 교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경우	재가 일부 확보되어 있 는 경우	
	1. 유해물질의 용기에 유해물질 표시가 적 절한가?	o 유해물질을 담은 용기에 유 해물질 경고 표시가 규격에 적합하게 선명히 부착되어 있는 경우	유해물질 경고표시가 규	해당 유해물질 표시가
	2. 출입금지 등의 각종 표지가 유해물질의 저장장소 등에 부착 되어 있는가?	에 출입금지 등 각종 표	에 출입금지 등 표지가 부적합하거나 일부만	에 출입금지 등 해당되
2. 유해물질 관리분야	3.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으며 적절하게 보 관되어 있는가?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 가 근로자 동수 이상으 로 지급되어 있으나 청 결하게 보관되어 있지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가 근로자 동수 이상으로 지급되어 있지 않는 경우
	4. 유해물질에 대한 MSDS가 작성되어 교육에 활용되고 있 으며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가?		대하여 MSDS가 작성 되어 있으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은 경우
	5. 유해물질 보관 장소에 설치된 환기시설은 적 절한가?	o 유해물질 보관장소에 강 제환기 방법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환 기장치를 점검하는 경우	자연환기만 실시 하고	o 유해물질 보관장소에 환 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 작업환경 관리분야 3-1 일반대책	1. 작업환경측정을 규정 대로 실시하고 유해 인자를 모두 파악하 고 있는가?	o 작업장내의 모든 유해인 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측 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자에 대하여만 작업	자 측정을 누락하거나

KOSHA GUIDE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양호	미흡	불량
	2. 노출기준 초과 또는 초과 가능인 작업정 소에 대한 대책 제시 가 정확하며 실제로 제시된 대책에 따리 개선을 실시하고 있 는가?	근접하는 장소에 대한 대책이 상세하고 정확하 며 그에 따른 개선이 수	책이 상세하고 정확하지 못하거나 그에 따른 개선	는 근접하는 장소에 대한 대책이 형식적으 로 제시되어 있으며,
	3. 분진, 관리대상유해물 질 등 화학적 인자여 대하여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등 공 학적인 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는 가?	등의 설치가 요구되는 모 ' 든 장소에 대한 개선대책 을 계획적으로 수립하여	일부 장소에 대하여만 개	장치 등의 설치가 요구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
	4.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 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수립 및 예비조사, 측정 등 전반적이 사하에 대하여 그	여하고 있는 경우	
3-2 분진	1. 분진작업 장소에 대한 설비는 규정에 적합한 가?		있는 경우	
	2. 제진장치는 제진방식 에 맞게 가동되고 있 으며 배기구는 옥외 에 설치되어 있는가?	에 적합하고, 배기구가 옥외에 옥상 높이보다	옥외에 옥상높이보다 1.5 m미만 혹은 건물높이의 0.5배 미만인 경우	류에 적합하지 않고 배기구가 옥외에 옥상
	3. 후드는 분진발생 장소 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적정 제어속도를 유지 하고 있는가?	한 후드가 설치되어 있으	형식, 제어속도 등이 양호 한 것의 50~90%수준인 경우	적절한 후드가 설치되 어 있지 않거나, 후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양호	미흡	불광
	4. 습식작업이 가능한 작업은 모두 습식 화 하였는가?		업을 50~90% 정도	
	5.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o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을 수 립하고 시행하며 근로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주기 적으로 개정·보완하는 경우	수립하였으나 프로그 램을 시행하지 않는	수립하지 않은 경우
	1. 밀폐공간보건작업프 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수립하고 시행하며 근로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주기 적으로 개정·보완하는 경우	을 수립하였으나 프로 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Ŷ
	2. 밀폐공간 작업을 실 시하는 경우 환기· 인원점검·출입금 지·사고 시 대피· 감시인의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는가?	o 적절한 체크리스트를 사용 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 한 후 지정된 절차를 거쳐 작업에 임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기는 하	여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며 지정된 절차를 거쳐 작업에 임하지
3-3 밀폐공간	3. 터널이나 갱 등 유해 가스가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장소에서 작 업하는 경우 유해가 스 농도측정 등 적절 할 조치를 취하는가?	<i>パ</i> ハ モレニ ニオの ユ ハ	려가 있는 작업에 대하	가 있는 작업에 대하여 해당 가스 농도를 측정
	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적절한 임 무를 부여하는가?	가 맡고 있는 임무를 중문 이 숙지하고 있는 경우	안전담당자를 지정하 였으나 담당자가 맡 고 있는 임무를 숙지 하지 못한 경우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측정한 후 작업에 임하는가?	하며 지정된 절차에 따라 작업에 임하는 경우	측정하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지정된 절차에 따라 작업하지 않는 경우	측정하지 않는 경우
	6. 필요한 때 송기 마 스크와 안전대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 급하는가?		을 실시함에 있어서 송기미스크·안전대 등을 공동으로 지급하	을 실시함에 있어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 는 경우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양호	미흡	불량
	1.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옥내작업 장에 대하여 소음발 생의 억제 및 전파 방지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였는가?	또는 기계기구를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에서 및폐•겨리•차다	음발생원의 근원적 대 책이 불가능하여 귀마 개, 귀덮개 등 개인방 음 보호구의 적절한 지	소음발생원에 대한 근 원적 조치가 미비하거 나 보호구의 미지급 및 착용상태도 불량한 경우
3-4	 개선 후에도 85dB(A)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청력보 호구를 지급하여 착 용토록 하고 있는 가? 	있는 경우	급된 청력보호구가 지급되어 있으며,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착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력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음·진동	3.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o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 하고 시행하며 근로자 의 견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 으로 개정하는 경우	수립하였으나 프로그	o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 립하지 않은 경우
	4. 진동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 을 실시하여 정상적 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고 있는가?	o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유지·보수를 실시하며 사 용설명서를 비치하는 경우	계·기구에 대하여 정 기적으로 점검 및 유 지·보수를 실시하지	계·기구에 대하여 점 검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 설명서도 비치하
	자에게 방진장갑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있는가?	o 진동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개인 전용의 방진장갑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 도록 하는 경우	에게 공동으로 방진장 갑 등 보호구를 지급 하는 경우	에게 보호구를 지급하 지 않는 경우
3-5 온 • 습도	1. 온·습도 조절 시설, 고열발생에 대한 국소배기장치, 고열 원의 격리나 복사 열 차단설비 등을 갖추었는가?	 치. 고열원의 격리나 복사	고열발생에 대한 국 소배기장치, 고열원의	열발생에 대한 국소배 기장치, 고열원의 격리 나 복사열 차단설비 등
	2. 고열작업 근로자에 게 방열복과 방열 장갑 등을 적정하 게 지급하고 있는 가?	o 고열작업 근로자에게 방열복, 방열장갑 등 필요한 보호 구를 개인 전용으로 지급 하여 착용하게 하는 경우	o 고열작업 근로자에게 방열복, 방열장갑 등	요한 보호구를 지급하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양호	미출	불량
	3. 고열작업 장소에 식염 과 깨끗한 음료수가 비치되어 있으며 작업 의 강도에 따른 휴식 시간은 적절한가?	o 고열작업 장소에 식염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비치하여 근로자가 이용 할 수 있게 하고 작업강도 에 따라 적절한 작업 및 휴 식 시간을 배분하는 경우	과 음료수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작업강도에 따라 적절한 작업 및	과 깨끗한 음료수를 비 치하지 않고 작업강도
	4. 한랭작업 근로자에 게 방한모, 방한장 갑, 방한복 등보호 구를 적정하게 지 급하고 있는가?	예방하기 위하여 비타	예방하기 위하여 비타 민·더운물을 비치하지	예방하기 위하여 비타 민·더운물 비치, 적절한 운동 실시 및 젖은 의복
	1. 방사선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 요한 때 밀폐·격 리·차폐 시설을 하였는가?	o 방사선 취급작업에 대하여 밀폐·격리 등 적절한 공 학적 대책을 취하고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가 적절 한 경우	하여 밀폐·격리 등 적절한 공학적 대책을	하여 밀폐·격리 등 적 절한 공학적 대책을 취
	 방사선을 취급하는 지역에 출입금지 등 적절한 경고 표 지와 흡연금지 표 시를 부착하였는가? 	o 출입금지 등 적절한 경고 표시를 선명하게 한 경우	o 출입금지 등 적절한 경 고 표시를 하였으나 식 별 등이 곤란한 경우	
3-6 전리·비전리 방사선	3. 필요한 때 근로자에 게 보호의와 호흡용 보호구 등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하는 가?	o 분말 또는 액체상의 방사 성 물질에 오염된 구역에 서 근로자가 작업토록 하 는 때 적절한 보호구를 지 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성 물질에 오염된 구 역에서 근로자가 작업 토록 하는 때 불완전한	사성 물질에 오염된 구 역에서 근로자가 작업 토록 함에도 보호구를
	4. 방사성물질을 관련 법에서 지정한 방 식에 따라 적절하 게 폐기하고 있는 가?	번 등에 따라 전절히 수거		로 폐기하는 경우
	5. 방사성물질의 가 스・증기・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 는 발산원에 대하 여는 밀폐를 실시 하거나 적절한 국 소 배기장치를 설 치하였는가?	한 국소배기상지들 설지하 여 원활하게 가동 및 유	증기·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적절한 국	려가 있는 발산원을 밀 폐하거나 적절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양호	미흡	불량
3-7 관리대상 유해물질	1. 관리대상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 발산할 우 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밀폐를 실시하거나 적절한 국소배기장치를 설 치하였는가?	를 들께하기다 작절인 국 소배기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경우	가스 ·증기 또는 분진 의 발산원을 밀폐하지 않거나 설치한 국소배 기 시설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적절한 국소배기 시설 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설치된 국소배기장 치는 적절한 제어 풍속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환기장 치를 설치한 경우 필요환기량 이상이 유지되고 있는가?	표 기준의 90% 이상, 전 체환기장치의 경우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 생되는 작업에 적용되는	기장치의 성능이 기준 의 70%에 미달하는	
	3. 작업장 바닥은 불 침투성 재료로 시공 되어 있는가?	o 작업장 바닥이 도기타일이나 에폭시 마감재 등 불침투 성 재료로 시공된 경우		성 재료로 시공되지 않
	4. 누출방지 조치, 경보 설비 설치 및 긴급 차단창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였는가?	이 모두 설치되어 주기저	경보설비·긴급차단장 치 등이 일부만 설치	경보설비·긴급차단장 치 등이 모두 설치되지
	취급설비 등에 대하여 작업수칙을 정하고 근 로자가 이에 따라 작 업하도록 하는가?	이를 숙지 후 작업에 임하 도록 하는 경우 0 발암성 물질을 취급함에	업수칙을 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숙지하 지 못하고 있는 경우 o 발암성 물질을 취급함	업수칙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o 발암성 물질을 취급함
	질에 대하여 취급일 지 등을 작성하는 가?	│ 있어서 해당물질의 명칭,	에 있어서 해당물질의 명칭, 사용량 및 사용	에 있어서 일지를 작성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양호	미흡	불량
	7.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작업 장소에 명칭 등과 흡연금지 표시 를 게시하였는가?	o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장 소에 해당 물질의 명칭 등 을 명확하게 게시한 경우		장소에 해당 물질의 명
	8. 운반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뚜껑·마개 등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저장 장소에 대하여는 출입금지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였는가?	o 운반 및 저장시설에 대하 여는 뚜껑·마개 등 적절 한 시설을 갖춘 후 저장 장소에 대하여는 출입금지 등 필요조치를 취한 후 관 리하는 경우	하여 뚜껑·마개 등 적 절한 시설을 갖추지 않 았거나, 저장 장소에	한 뚜껑·마개 등 적절 한 시설과 저장 장소에 대한 출입금지 등 필 요조치를 취하지 않은
	9.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게 세척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o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근 로자에게 세척시설과 충 분한 양의 온수와 냉수를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급 근로자에게 세척시 설과 물을 공급하나	근로자에게 세척시설을
	10. 필요한 때 적절한 보호구나 보호의를 지급한 후 착용하 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가?	o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근 로자에게 개인전용의 호흡 용 보호구나 보호의 등을 지급한 후 착용하도록 하 고 수시로 보수·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급 근로자에게 공동 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나 수시로	근로자에게 호흡용 보호 구나 보호의 등을 지급
	1. 별도의 구획된 장소 에서 물질을 취급· 사용하는가?	o 허가대상유해물질을 타 작 업장소와 완전히 구획된 별도의 격리 작업장에서 취급·사용하도록 하는 경 우	구획된 별도의 작업장 에서 취급·사용하도록	작업장소와 혼용된 경우
3-8 허가대상 유해물질	2. 작업장에 출입금지 표시를 게시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 을 제한하고 있는 가?	o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 장 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명확히 부착하고 관계자외의 출입 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급 장소에 출입금지표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미부착하고 모든 근로
	3. 밀폐시설을 설치하 거나 밀폐형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 및 가동하고 있으며 해당 장치는 적절한 제어풍속을 유지하고 있는가?	o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취급 하는 장치를 밀폐하거나 밀폐형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제어속 도로 가동하고 있는 경우	취급하는 장치를 밀 폐하거나 밀폐형 국소	거나 밀폐형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양호	미흡	불량
	4. 작업장 바닥은 불 침투성 재료로 시 공되어 있는가?	o 작업장 바닥이 도기타일이나 에폭시 마감재 등 불침투 성 재료로 시공된 경우		o 작업장 바닥이 불침투 성 재료로 시공되지 않 은 경우
	5. 취급설비 등에 대히 여 작업수칙을 정히 고 근로자가 이어 따라 작업하도록 히 고 있는가?	시로 스키 ㅎ 자이에 이귀	업수칙을 정하였으나	o 해당 작업에 대하여 작 업수칙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6. 작업장에는 명칭 등 과 흡연금지 표시를 게시하였는가?	o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해당 물질의 명칭 등을 명확히 게시한 경우		o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해당 물질의 명 칭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7. 긴급세척시설과 조절한 목욕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용품을 비치하였는 가?	세척시설과 목욕시설을 갖	취급하는 일부 작업장소 에 긴급세척시설이나	o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취급 하는 작업장소에 긴급 세척시설과 목욕시설이 없는 경우
	8.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한 후 착용하도록 하고 보수하거나 교 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용의 호흡용 보호구나 보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공동의 호흡용 보호구 를 지급하거나 수시로 보수·교체할 수 있도	이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호흡용 보호구나 보호의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작업관리	1. 근골격계부담작업여 대하여 유해요인조 사를 주기적으로 실 시하고 필요한 때 환경 개선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를 기록·보존하며 근로자 의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 는 때 3년마다 유해요	o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 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 유해요인조사를 실 시하지 않는 경우
분야	2.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건강장하 징후가 나타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 게 통지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가?	하는 근로자가 건강장해 징후를 느낀 때 사업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건 강장해 징후를 느낀 후	o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 사하는 근로자가 건강 장해 징후를 느꼈음에 도 사업주에게 통지하 지 못하는 경우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양호		미흡	불량
	로 약 건강 끼는 조치	격계부담작업으 인하여 근로자가 장해 징후를 느 경우 의학적 등 적절한 조 취하고 있는	o 근로자가 건강장해 징후를 느끼는 때 작업환경을 가 선하고 필요한 의학적 조 치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장해 징 후를 느끼는 때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거 나 필요한 의학적 조 치를 받도록 하지 않 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장해 징후를 느꼈음에도 작업 환경 개선과 필요한 의 학적 조치를 함께 취하 지 않는 경우
	리프	격계질환예방관 로그램 수립하 시행하고 있는	0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 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였 으나 프로그램을 시행 하지 않은 경우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대하 업의 표시	물 취급작업에 여 과도한 작 제한과 중량 등 필요한 조 취하고 있는	o 중량물취급작업에 대하여 인력작업을 제한하고 적 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히 며 5kg 이상의 중량물에 는 중량과 무게 중심을 표시한 경우	-	중량물취급작업에 대한 인력작업의 제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또는 5kg 이상 중량물에 대한 중량과 무게중심 표시 조치 중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중량물취급작업에 대한 인력작업의 제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5kg 이상 중량물에 대한 중량과 무게중심 표시 조치를 모두 취하지 않은 경우
	종사 ⁾ 요한 고 ²	터 단말기 작업 자에 대하여 필 시설을 제공하 석절한 휴식시간 -여하고 있는가?	o 컴퓨터단말기 작업에 대히 여 직사광선 회피, 휘도 저 어, 조절 가능한 책상과 의 자, 적정한 휴식시간 배분 조치를 취하는 경우		컴퓨터단말기 작업에 대하여 직사광선 회 피, 휘도 제어, 조절 가능한 책상과 의자, 적정한 휴식시간 배분 조치 중 일부를 하지 않는 경우	컴퓨터단말기 작업에 대하여 직사광선 회 피, 휘도 제어, 조절 가능한 책상과 의자, 적정한 휴식시간 배분 조치를 모두 취하지 않는 경우
	여 2	스트레스에 대하 평가 등 적절한 를 취하고 있는	o 정기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휴식 시간의 제공 등 필요 조치 를 취하는 경우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휴식시간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양호	प] <u>क</u>	불량
	1. 개인별로 건강기록 카드를 작성하고 상담일지를 작성하 여 관리하고 있는 가?	o 근로자 개인별 건강기록 카드 또는 상담일지 등을 작성·기록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개인별로 적절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하고 있는 경우	점에 대하여 일괄적인 관	록카드 또는 상담일지 등을 작성·기록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5. 근로자 건강 관리 분야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자의 선정과 검사 항목은 적절한가?	o 특수건강진단을 대상근로 자 전체에 대하여 법적검 사항목 외에 추가적인 검 사를 필요에 따라 실시하 는 경우	o 특수건강진단을 대상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법정검사 항목에 대하여 누락 없이 실시하는 경우	로자에 대하여 특수
	3. 요관찰자 또는 질병 자에 대하여는 적절 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o 요관찰자 또는 질병자에 대하여 지정병원을 통한 정기적인 의사의 검진, 작업전환, 유급휴가, 치료비 지원, 상담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상담 및 의사소견에 따른 조치가 일부만 이루어지	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샤워 및 세면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생 및 청결, 정리, 정돈상태는 양호한 가? 	o 작업장과 구분된 공간에 샤워 및 세면설비가 설 치되어 있으며 청결하게 관리되는 경우	o 작업장과 구분된 공간에 샤워 및 세면설비가 설치 되어 있으나 청결, 정리 정돈상태가 미흡한 경우	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6. 근로자 후생 복지 분야	2. 세면장은 화장실과 격리되어 있는가?	o 세면장이 화장실과 별도 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위생적이며 청결한 상태 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도의 공간으로 구분되
	3. 세면장은 충분히 넓 은가?	o 세면장의 넓이를 근로자수 에 비례하여 아래기준에 90%이상 만족하여 확보하 고 있는 경우		
		- 남자용 : Y(m') = 2m' + 1 - 여자용 : Y(m') = 2m' + 1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양호	पो <u>ठ</u>	불량
	4.	탈의실과 목욕실은 적정 순서로 구분 하여 배치되어 있 는가?	0 탈의실과 목욕실이 구분 되고, 탈의실은 일상복 탈의실과 작업복 탈의실 로 구분되며, 탈의실과 목욕실의 배치가 아래 흐 름을 만족할 수 있는 순 서로 되어 있는 경우	되고, 탈의실이 일상복 탈의실과 작업복 탈의실	분되지 않거나, 구분되 었다 하더라도 탈의실 이 일상복 탈의실과 작 업복 탈의실로 구분되
	5.	갱의실은 작업복과 일상복을 구분하여 보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o 갱의실에는 개인별로 작 업복과 일상복을 구분하 여 보관할 수 있는 보관 함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함의 정리 정돈 및 청소상태가 양호한 경우		관함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공용의 옷걸이
	6.	휴게실은 유해물질 취급장소와 격리되 어 있는가?	o 휴게실이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별 도로 설치되어 근로자들 이 휴식시간에 맑은 공기 를 마시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는 경우	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별 도로 설치되어 있으나 주	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7.	휴게실은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 록 충분히 넓은가?		준에 50~90% 수준을 만족하여 확보하고 있는 경우), X : 동시 최대 휴식인원 아이고 휴게실과 식당을 같이 시	기준에 50% 미만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
	8.	식당은 근로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충분히 넓으며, 유 해물질이 유입될 우 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충분히 만족하여 확보하고 있고 유해물질 유입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	준의 50-90% 수준을 확 보하고 있고 유해물질 유입의 우려가 없는 장 소에 설치된 경우	준의 50%미만으로 확 보하고 있고 유해물질 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양호	미흡	불량
	9. 건강관리실은 근로자 가 쉽게 찾을 수 있 는 곳에 있는가?	o 건강관리실의 위치가 근 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 고, 응급조치가 가능한 장소에 있는 경우	근로자가 쉽게 찾을	곳에 설치되어 근로자 가 쉽게 찾을 수 없
	10. 건강관리실은 상·하 수도설비, 침대, 냉난 방 장치, 외부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필요한 시설 갖 추고 있는가?	외부연락용 직통전화, 구 급용구 등이 충부히 각추	도 설비, 침대, 냉난방 시설, 외부연락용 직통 전화, 구급용구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일부	도설비, 침대, 냉난방시 설, 외부연락용 직통전 화, 구급용구 등이 갖
	11.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으며 급수상 태는 양호한가?		기)가 수세식으로 되	기)가 수세식으로 되
	12. 화장실의 채광 및 조 명상태는 양호한가?	o 화장실의 창이 채광이 가 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 조 명상태가 양호한 경우		불가능한 형태이며, 조
	13. 화장실은 환기 상태 가 양호하며, 화장 실의 악취가 사무실 또는 작업장내로 확산되지 않는가?	장실 악취가 사무실 또는	전체환기용 배풍기는 설치되어 있으나 성능	량하여, 화장실 악취가 사무실 또는 작업장내로
	14. 화장실 변기의 숫자 는 이용하는 근로자 의 수와 비례하고 있는가?		구(변기)의 수가 아래기 준에 50~90%정도로 설	구(변기)의 수가 아래기 준의 50%미만으로 설치 되어 있는 경우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양호	미흡	불량
	15. 화장실 바닥은 물청 소가 가능하도록 방 수 처리가 되어 있 으며 배수에 적합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가?	되어 있으며 물청소 시	가능하도록 방수처리가 되어 있으며 물청소 시 부분적인 바닥의 물고임	어려운 상태이거나, 물 청소 시 바닥의 배수 상 태가 불량한 경우
	16. 화장실의 청소 및 소독, 청결, 정리, 정돈 상태는 양호 한가?		루어지고 있으나 소독 주기 등이 길어 위생·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1. 사무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기류 의 속도는 적절한가?		위하여 공기정화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나 기류의	한 공기정화시설을 가 동하지 않는 경우
7. 사무실	2. 공기정화시설에 대하여 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 하고 필요시 개·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 고 있는가?	지설비를 주기적으로	집진설비나 온·습도 유지설비를 개·보수	집진설비나 온·습도 유지설비를 적절히 관
7. 사무실 공기질분야	3.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사무실 공기질 기준을 준수하는가?	o 다음 기준에 각각 90%이 상 적합한 경우 - CO: 10 ppm이하 - CO₂: 1,000 ppm이하 - 호흡성분진: 150 μ/m³ - HCHO: 0.1 ppm 이하	o 해당 기준에 각각 70%이 상 적합한 경우	o 해당 기준의 70%에 미 달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4. 공기정화시설을 개· 보수하는 경우 보호 구의 지급과 오염물 질에 대한 주지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오염물질에 대한 주지를	수 시 적절한 보호구 지급하지 않거나 오염	수 시 적절한 보호구 지급하지 않고 오염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양호	미흡	불량
	1. 작업면 등에 대하여 는 적절한 조도를 유 지하고 있는가?	마조치 거ㅇ	o 해당 기준에 70% 아상 적합한 경우	o 해당 기준에 50% 이상 적합한 경우
	2. 잔재물은 적절히 처리 하거나 폐기하는가?	o 인체에 해로운 잔재물을 중화·침전·여과 그 밖 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하고 결과를 보존하는 경우	처리하나 방법이 부적절 한 경우	
	3. 근로자의 작업 장소 는 청결히 유지되고 있는가?	o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 에 대해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는 경우		
8. 기타분야	여는 정기적으로 자	o 1년에 1회 이상 자체검사 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사를 실시하였으나 결과	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
	5. 국소배기장치의 후 드·닥트·배풍기와 배기구는 적절히 설 치되어 있는가?	전전히 설치되어 있으며	트·배풍기와 배기구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원래의 설계목적	다트·배풍기와 배기구 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 지 않은 경우
	6. 근로자가 작업을 실 시하고 있는 때 국소 배기장치를 상시 가 동하고 있는가?		근로자가 작업 중에 상	근로자가 작업 중에 임 의로 가동 중지시킨 사

<별표 3> 평가 수준별 분류표

■ 평가일자 :

■ 평가수준 "불량"인 항목

연번	부서명	공정명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특기사항 (문제점 등)	비고

■ 평가수준 "미흡"인 항목

연번	부서명	공정명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특기사항 (문제점 등)	비고

■ 평 가 팀 : 소속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별표 4> 개선 계획서

■ 작성일자 :

■ 작성자:

■ 부 서 명 :

연번	항목	세부 개선방법	목표	추 진 일 정				개선결과	소요	개선후	담당자
				3월	6월	9월	12월	평가방법	예산	효과	책임자 (확인자)